

반 소 장

사 건 2000가단0000 물품대금

피고(반소원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원고(반소피고)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.

하자보수비청구의 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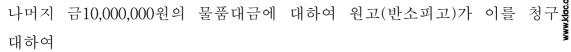
반소청구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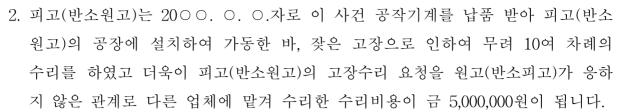
- 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금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반 소 청 구 원 인

1. 원고(반소피고)가 20〇〇. 〇. 〇.자로 이 사건 공작기계를 제작, 납품하여 이에 따른 물품대금 20,000,000원 중에서 피고(반소원고)가 금 10,000,000원을 지급하고





- 3. 또한, 피고(반소원고)는 이 사건 공작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출용 부품 제조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다른 업체의 공작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 바, 그 임차비용으로 금 10,000,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.
- 4. 따라서 피고(반소원고)는 이 사건 공작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합계 금 15,000,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(반소피고)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의 잔여금액 금 1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(반소원고)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금 5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반소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 공작기계제작 · 납품계약서

1.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각 수리비영수증

1. 을 제3호증 공작기계 임대차 계약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반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○○. ○. ○. 위 피고(반소원고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	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민사소
제출법원	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송법 제269조 제1항)
제출부수	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.
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※ 아래(1)참조
 비 용	단,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
미 · 중	의 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)
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•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	·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
	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(補修)를 청
	구할 수 있으나,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(補修)에 과다 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(補修)에
	한 미용을 요일 때에는 그더야지 아니임. 도급인는 아자의 모구(補修)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(補修)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민법 제
	설심하여 오는 모구(袖修)가 함께 는에배경을 경기할 수 있음(천합 제 667조 제1항, 제2항).
	·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
	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(補修)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하자의 보수(補修)
	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(補修)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, 이
	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(報酬)지급청구권과
	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(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다
	21632 판결).
	·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
	데(민사소송법 제271조),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
	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
기 타	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
	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,
	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
	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,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
	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(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298 판결).
	·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
	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, 상대방이 이의를
	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
	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(민사소송법 제412조).
	·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, 반
	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
	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
	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
	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
	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
	하여야 할 것임(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6708 판결).



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